

의안번호	2214535
의 퇴 인	이해민의원· 이주희의원
회 답 일	2025.12.2.
추계번호	25D6399

국회과학기술처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(지위)	국회과학기술처(이하 “과학기술처”라 한다)는 국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소속 하에 둠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3조 (직무)	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의 조사·연구 및 정보의 제공, 입법 및 정책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보급,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,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·사회·문화·윤리·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, 국내외 과학기술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, 국회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처리함	의무규정
3	안 제4조 (처장)	과학기술처의 장(이하 “처장”이라 한다)은 정무직으로 하고,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8조 (조직)	과학기술처의 보조기관은 실장·국장 및 과장으로 함. 다만,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음(제1항) 처장·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,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하나 둘 수 있음(제2항) 실장은 1급 또는 2급, 국장은 2급 또는 3급,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,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(제3항)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 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(제4항) 과학기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, 실·국·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5	안 제9조 (과학기술영 향평가)	과학기술처는 제3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·사회·문화·윤리·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과학기술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(제1항) 과학기술처는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(제2항) 그 밖에 과학기술영향평가의 범위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2조(지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조(직무)	
3	안 제4조(처장)	
4	안 제8조(조직)	
5	안 제9조 (과학기술영향평가)	

2. 상세사유

- 제정안은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의 조사·연구 및 정보의 제공, 입법 및 정책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보급,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,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 경제·사회·문화·윤리·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, 국내외 과학기술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, 국회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처리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를 위해 차관급의 처장, 실장·국장 및 과장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중원에 따른 인건비, 기본경비, 사업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- 다만, 국회과학기술처의 조직, 정원, 실·국·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
 - 국회 소속기관 중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(2007년 신설)의 경우 처장 밑에 3개 실·국 및 10개과, 65명의 공무원으로 신설되었는데, 2008년 기준 입법조사처에 편성된 예산은 56억 5500만원이었음

- 국회미래연구원(2018년 신설)의 경우 원장, 박사급 인력 8명 및 행정인력 3명 등 총 12명의 인원으로 신설되었는데, 2019년 기준 국회미래연구원에 편성된 예산은 50억 4,700만원이었음

Ⅲ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